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처분을 한 이후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174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행정처분을 한 이후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2
※ 참고자료	6
1. 환경책임보험제도	6

I. 제안경위

2024년 6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시설의 변경에 따라 해당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후에도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해당 환경오염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그 구성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행정처분을 한 이후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¹⁾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시설의 변경에 따라 해당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²⁾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명령³⁾을 받은 경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환경책임보험”이란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3.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4.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
 7.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환경책임보험에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
 2. 환경책임보험이 개발·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 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3조제6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허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 ⑥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 보장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로서 그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해당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 인·허가 또는 변경 등	제4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4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해당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4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해당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3조(행정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u>록·신고에 적합하도록 변경 하지 아니한 사업자</u>	<u>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을 변경 인·허가 또는 변경 등록·신고에 적합하도록 변 경하지 아니한 사업자</u>
--------------------------------------	--

정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경제 형벌 합리화 계획을 발표하고, '22년 7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하여 경제 형벌규정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제 형벌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면 경제 형벌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제재 효과를 유지하면서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인·허가를 미반영한 경우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고,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

참고로 환경부는 일부 신규 기업 등 보험 가입⁴⁾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기업에게 과도한 처벌보다 조치기회를 부여하여 조속한 가입을 유도하고 제도 수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인·허가를 미반영한 경우 먼저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임⁵⁾.

문 의 처
02)6788-5542

4) 가입대상 15,576개 사업장 중 98.9%인 15,400개소 가입('24.5)

5) 최근 5년간 형벌 및 행정처분 부과 건수

처분년도	행정처분				고발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합계	73	1	0	0	62
2019	25	0	0	0	18
2020	29	1	0	0	29
2021	4	0	0	0	3
2022	9	0	0	0	8
2023	6	0	0	0	4

※ 출처 : 환경책임보험전산망

1. 환경책임보험 도입 배경

- **(도입배경)** 구미 불산사고('12) 등 잦은 환경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에 대비한 재정적 수단 필요성 대두
 - △신속한 피해자 보상, △위험 분산을 통한 사회 비용 경감을 위해 의무보험으로 **환경책임보험** 도입('14.12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정, '16.7 시행)

2. 가입대상 및 현황

- **(가입대상)**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가입 의무화
 - *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
- **(가입현황)** 가입대상 15,576개 사업장 중 98.9%인 15,400개소 가입 ('24.5)

3. 환경책임보험의 배상범위 및 한도

- **(보장범위)** 피보험자의 시설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 발생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등 보장

환경책임보험이 배상하는 사항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등

- **(보험 보장한도)** 단일사고에 대한 보험 보장금액은 시설 종류

에 따라 30억원에서 300억원

시설의 종류 (규모 및 위험도에 따라 구분)		보험 보장금액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가'군의 시설		300억원	2,000억원
'나'군의 시설	대기업·중기기업의 시설	100억원	1,000억원
	소기업의 시설	80억원	
'다'군의 시설	대기업·중기기업의 시설	50억원	500억원
	소기업의 시설	30억원	

- '가'군 시설의 경우 300억원까지 보험을 통해 보상, 300~2,000억원까지는 사업자 부담, 2천억 초과시 국가가 피해구제

